

(관 인 생 학)
 서울특별시

제 17

회계 22102-2185

(731-6251)

1986.12. 2.

수신처 : 수신처 참조

제 목 : 기성금 지급기준 설정운영

다음과 같이 기성금 지급기준을 설정하여 시달하니 이행에
 철저를 기할 것.

1. 지급기준

공	종	지 급 상 한 선
기계설비공사		계약금액의 70%
특수기계		
	설치도	" 70%
	현장도	" 85%
설시설계용역		" 85%
감리용역		" 85%
일반공사		" 85%

2. 적용대상

사업의 성격상 기성검사가 어렵고 기성후에 문제발생 소
 지가 있는 특수사업

3. 운용방법

계약시마다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

4. 실시일자 : '86.12.2 이후 계약분부터 실시. 끝.

서울특별시 장

수신처 : 울림피건축담당관, 울림피토목담당관, 울림피설비담당관, 서구1-17
 서사1-58, 소방본부, 경찰국(교통과), 도시계획국, 건설관리국,
 환경녹지국, 교통국, 상하수국, 감사관, 산업경제국.

성명	김기원	성명	김기원
생년월일	1986.12.3	성명	김기원
직위	부이사관	성명	김기원

"뜻모야 하나로 입모야 세게로"

(관인생략)

서울특별시

예규

회계 22107- 218 | 626

1986. 12. 1.

수신 수신처 참조

보충연산: 준영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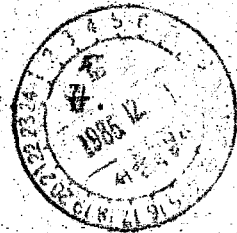
제목 준공검사 및 납품검사 입회방법 개선

1. 회계 1210-812('83.9.12)호 갑수 입회제도 및 갑사 01530(1)-512('86.11.6)호와 관련임.

2.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7조 4항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및 납품검사 입회방법을 별첨과 같이 개선 통보하니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입회제도 목적달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것이며

3. 특히 입회공무원 지정은 과장(과제가 없는 기관 소장)이 직접 지정하여 입회 업무토인단 물의가 없도록 조치할것.

첨부 : 준공검사 및 납품검사 기관별 입회공무원 기준 1부



서울특별시 장

(재무국장 전결)

수신처 : 서과1-79, 서구1-17, 서사1-58, 서보1-17, 서소1-11.

관 결	시립아동병원	유	결 재	유장
진수일시	1986.12.2	비	(공	관
시리파	시리	기	발)	계정

011

준공검사 및 납품검사 기관별 입회 공무원 기준

1. 주요내용

구분 \ 내용	내 용	대당기관	비 고
입회 생략	. 기성 검사 . 물품 : 300만원 미만 . 공사 : 500만원 미만	전기관	
내용별 검수입회	제2항 참조		

2. 내용별 검사(검수) 입회

가. 물 품

기관별 \ 내용	금 액	입 회	비 고
본 청	1,000만원 미만	회계과 심사계 6급이하 1명	
	1,000만원 이상	회계과 심사계장 회계과 6급이하 1명	
구 청	500만원 미만	재무과 경미계 7급이하 1명	
	500만원 이상	재무과 경미계장 재무과 7급이하 1명	
직 말 사 업 소	500만원 미만	경리부서 6급이하 1명	
	500만원 이상	경리부서 계장 중비부서 6급이하 1명	
사 업 소	500만원 미만	경리부서 7급이하 1명	
	500만원 이상	경리부서 계장 경리부서 7급이하 1명	
종합 건설본부	1,000만원 미만	경리과 7급이하 1명	
	1,000-3,000만원	경리과 계장 1명 경리과 7급이하 1명	
	3,000만원 이상	경리과장 경리과 7급이하 1명	

나. 공 사

기관별 / 내 용	금 액	인 원	비 고
본 청	1억원 미만	회계과 심사계 6급이하 1명	
	1억원 이상	회계과 심사계장 회계과 6급이하 1명	
구 청	1,000만원 미만	재무과 경리계 7급이하 1명	
	1,000만원 이상	재무과 경비계장 재무과 7급이하 1명	
직할 사업소	1,000만원 미만	경리 부서 6급이하 1명	
	1,000만원 이상	경리 부서 계장 경리부서 6급이하 1명	
사 업 소	1,000만원 미만	경리 부서 7급이하 1명	
	1,000만원 이상	경리 부서 계장 경리부서 7급이하 1명	
종합 건설본부	3,000만원 미만	경리과 7급이하 1명	
	3,000만원~5억원	경리과 계장 1명 경리과 7급이하 1명	
	5억원 이상	경리과장 경리과 7급이하 1명	

3. 공사와 물품의 중요도 및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기관장이 2명의 금액과 구분에 불구하고 직급 또는 인원수를 조정할수 있다.

" 동도야 하니로 힘도야 세개도 "
(가이업)

서울특별시

회계 2210-1146

731-0251

86. 11. 5

수신 수신처 참조

1986년 11월 5일

제목 개업사무처리규칙 개정 통보

1. 재투부회계 2210-3352(1986.10.27)에 귀한입.

2. 지방중소인제를 보호하고 지방경기를 활성화 시키기위하여 지방중인 지역제한 경쟁
입찰제도의 최종 지역을 일부 조장하기 위하여 개업 사무처리규칙을 발췌내용과 같이 개정
86.11.1부터 시행(재투부회계1986.10.25판5계제)됨을 알려타니 개업업무 집행에
차도 알기 바랍니다.

첨부: 개업사무처리규칙중 개정령 1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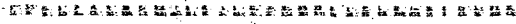
전 결	시행이유명원	SM	전 재 (공 판)	원장	(인)
일기	1986.11.7	1970		과장	
리자	시행이유명원	SM		계장	

서울특별시

개도국산 전결

수신처: 업무과, 양정과, 소방본부, 서규1-17, 서소1-11, 서사1-57, 서보1-17.

개항시속저지규칙중개정령



개항시속저지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 제1항 제2호의 2 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(의2 공사전상 일출지 용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, 지방시 또는 도 (이하 "시, 도"라 한다))
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지는 입찰참가지격을 제한하는 공사용의 경우에만, 지방시가 신설되
는 때에 있어서는 도의 관할구역중 일부가 지방시로 승격된 후 2년간은 지방시 또는 도의 관할구
역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으면 당해 지방시 및 도의 관할 구역안에 각각 주된 영업소가 있는
것으로 본다.

부

칙

규칙은 196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. 구조론 대비표

년	개	항	칭	안	안
제27조 (집합기준) 1. 개인담당공무원이 시당청 계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단경쟁입찰에 부일 수 있는 경우는 타함 각도의 같다.	제27조 (집합기준) 1	1-6 (생략) C의 2 공사년장, 납품지등을 관할하는 시,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도 제단하는 경우	1-6 (년당미 같음) C의 2 공사년장, 납품지등을 관할하는 시 충북별시, 직할시 또는 도 (이하 "시.도" 라 한다)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지도 입찰 참가 자격을 제단하는 공시등의 경우 다만, 직할시 가 신설되는 때에 있어서는 도의 관할구역중 일부가 직할시로 승격된 후 2년간은 직할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년 당해 직할시 및 도의 관할구역안에 각각 주된 영업소가 있는 것으로 한다.	(1) ~ (2) (생략) 7. 생략 2 (생략)	(1)~(2) (년당미 같음) 7. (년당미 같음) 2 (현행과 같음)